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69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 의 자 : 윤준병 · 문대림 · 송옥주
김교홍 · 문금주 · 안호영
박홍배 · 복기왕 · 강준현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

과세 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 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생략)

과세 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현행과 같음)